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0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자	이 *자 1958-12-2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(영천동)	직권말소 2024-11-20